

장학부제

장 학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재단의 장학금, 학문연구비, 해외유학비 (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 수혜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구분) 본 재단의 장학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문연구비 지급.
3. 해외유학비 지급.
4. 기타 정관이 정한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 3 조 (수혜대상자) 수혜자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자로서 중학교 이상에 재학하는 학생.
단, 본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학문연구비) 각종 학문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함에도 경제적 자유로 연구를 계속하기 곤란한 단체 및 개인.

3. (해외유학비) 각 기관의 해외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외유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심이 깊고 애국심이 강하면서도 경제적 사유로 해외유학을 하기가 곤란한 자.
4.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 특별히 추천하거나 본 재단에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 조 (수혜자 선발방법) 수혜자의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중 본 재단의 선발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2. (학문연구비 및 해외유학비) 각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및 개인을 본 재단의 선발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이의 심사를 위하여 이사장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사무의 위임) 이사장은 수혜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위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 6 조 (수혜자의 심사방법) 수혜자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
2. (학문연구비) 논문 또는 연구계획서 및 서류심사에 의한다.

3. (해외유학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

제 7 조 (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등은 본인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수혜자의 계속)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수혜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장학금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장학금등의 지급시기) 장학금등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 단위로 하여 매학기분을 전학기 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매학년초 또는
전학년말에 1년분을 지급할 수 있다.

2. 학문연구비는 매년 3월까지 지급한다.

3. 해외유학비는 출국전에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이 계속될 때에는
매학기 전에 송금한다.

제 10 조 (장학금등의 지급정지) 수혜자로 선발된 자로서 제 3 조에 규정한
수혜대상의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장학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 11 조 (신청절차와 범위의 제한) 장학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소속 기관장을 통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본 재단은 수혜대상을 학교, 학과, 학문연구소등을 지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서 제출) 장학금등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단체 및 개인은 학업성적, 연구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또는 본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 기일내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혜자의 정원) 수혜자의 정원과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